제11판

1차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은 국제사회는 1919년에 국제노동기구(ILO)를 창립하였다. ILO 헌장의 전문(Preamble)의 첫 문장은 "항구적인 세계 평화는 사회 정의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Universal and lasting peace can be established only if it is based upon social justice)"이다. 그러나 '사회 정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대공황과 전체주의의 등장으로 좌절되고, 다시금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들었다. 2차 세계대전의 말미인 1944년에 ILO는 「필라델피아 선언」을 통해 위의 ILO 헌장의 정당성은 경험에 의해 완전히 증명되었음을 천명하였다.

사회 정의와 유사한 우리 헌법상의 용어는 '경제 민주화'일 것이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경제 민주화 등을 위한 국가의 규제와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제2항에서 국가의 규제를 정한 것이다. 그러나 1948년 제헌 헌법은 경제 조항에 대해 현행 헌법과 '반대의 순서'로 규정하였다. 제헌 헌법 제84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즉, 사회 정의의 실현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한계 내에서 경제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라고 불리운 '시장 만능주의'(알랭 쉬피오 교수는 '시장 전체주의'라 칭했다)의 역습은, 우리 헌법상 경제 조항의 순서를 뒤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기 시작하였다. 비정규직, 특고, 사내하청 등은 그 산물이다. 물론 경제활동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 정의의 토대가 허술한 상황에서의 자유와 창의는 노동의 불안정과 궁핍을 야기한다.

노동법을 비롯한 사회법은 사회 정의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자유와 창의만을 제1 원칙으로 신봉하는 기업들은 종종 노동법의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 그래서 노동법의 첫 번째 관문은 언제나 '근로자 찾기'와 '사용자 찾기'이다. 타인의 노동을 이용한 자가 어떤 권한을 행사했다면, 그 에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 노동법은 끊임없는 술래잡기를 한다.

어떤 기업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다른 기업은 자영업자(그러나 실질은 근로자, 즉 위장 자영업자)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자영업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노동법의 규제를 회피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얻는다. 플랫폼 노동의 본질을 파헤친 옥스퍼드 대학의 제레미아스 아담스—프라슬 교수는 그의 저서 「Humans as a service」(국내 번역서: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에서, 이를 "규제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노동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근로자 대신에 자영업자(독립 사업자)의 형식으로 계약관계를 맺는 것이다.

노동법의 규제를 회피하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추가 이익을 얻는다. 이는 기업 간의 불공정 문제를 초래한다. 법을 준수한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국가의 사회보험 재정을 부실하게 한다. '위장 자영업자'로 오분류(誤分類)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다시 재분류하는 것(즉, 근로자성의 인정)은,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각 조문의 제1조에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이다.

법 준수의 토대 위에서는 얼마든지 자유, 창의, 혁신 등이 촉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을 준수하지 않는 그것들은 현란한 사기술에 불과할 뿐이다. 현란한 사기술은 도리어 혁신을 방해한다. 노동법의 규제를 회피하며 저렴하게 노동력을 이용하는 플랫폼 기업(예컨대, 음식배달 플랫폼)이 만연히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 누가 '음식배달용 드론'과 같은 신도구를 개발하고 투자하려 할까. 그저 배달 한 건당 3,000원을 배달기사에게 주면 그만인데.

사회 정의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노동법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숨으려는 자와 찾으려는 자간의 술래잡기가 쉽게 끝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술래잡기의 목적을 한번 더 새겨볼 필요가 있다.

노동법을 공부하는 독자들과 노동법의 존재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다. 언제나 이 책을 애독해주신 독자들과 올해도 변함없이 출간에 힘써주신 도서출판 웅비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0년 8월 바가수 바사